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법무부 국제법무과 공익법무관 공 보 영

I. 회의 개요

1. 회의 경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4실무작업반(이하 ‘작업반’)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제규범 마련을 과제로, 「국경간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규범안」을 만들기 위해 2019년부터 총 3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제61차 작업반 회의는 2021. 4. 6. 부터 9.까지 미국 뉴욕에서 대면과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2. 회의 결과 요지

제61차 회의는 모델법(model law) 규범화를 전제로 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② 전자서명조항 관련, 초안 규정과 기존 UNCITRAL 규범과의 정합성 판단, ③ 국

경간 승인, ④ 정의 조항 일부의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A/CN.9/WG.IV/WP.167, 이하 ‘초안’).

당초 이번 회기에서 초안의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결과 국가 주도의 전자서명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EU식 모델(eIDAS Regulation 기반)을 지지하는 나라와 계약법적 규율을 강조하는 미국식 모델을 지지하는 나라 간 이견이 상당하여 일부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루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기존 계획과 달리, 올해 10월 18일부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62차 작업반 회의에서 추가 일정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II. 제61차 작업반 회의 주요 논의사항

1. 제1조(정의) 관련

① 초안 제1조 (c)1)는 신원관리(IdM) 서비스의 맥락에서 개인과 신원 간 구속력을 보장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는데, 해당 프로세스 명칭을 무엇으로 할지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과거 제59차 회의에서 위 프로세스의 명칭을 “Electronic Identification”²⁾으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섹터(ITU-T)의 제6조 제12항 “Entity Authentication”³⁾의 내용을 차용한 것인데, ITU-T가 법인격(entity)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반면, 당시 초안은 인격(person)뿐 아니라 사물(object)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의적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용어(“Authentication”)를 그대로 베끼지 않고, “Electronic Identification”으로 바뀌어서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제59차 회의에서 신원관리 서비스뿐 아니라 신뢰서

비스(trust service) 맥락에서도 사물과 신원을 연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Authentication”⁴⁾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지난 제60차 회의 논의 결과, 신원관리 서비스 및 신뢰서비스의 대상에서 “사물”이 전부 삭제되면서 “Authentication” 규정은 자연스럽게 삭제되었다. 반면, “Electronic Identification”의 경우 “사물”이 삭제됨에 따라 “인격(person)”에 대한 신원관리 프로세스만 남게 되어 당초 ITU-T에서 정의 조항을 차용할 때 고려했던 문제점이 해소되어 ITU-T 제6조 제12항과 동일하게 명칭을 “Electronic Identification”에서 “Authentication”로 다시 수정할지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이와 관련, 이번 제61차 회의에서는 “Electronic Identification”은 인증대상 자체 또는 결과로서의 상태 개념이고, “Authentication”은 인증대상을 증명하는 과정의 개념이므로 정의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Authentication”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와

1) Article 1. Definitions (c) “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in the context of IdM services, means a process used to achieve sufficient assurance in the binding between a person and an identity.

2) Article 1. (d) “Electronic identification”, in the context of IdM services, means a process used to achieve sufficient assurance in the binding between a [subject][person] and an identity.

3) ITU-T X.1252 Terms and definitions 6.12 (entity) authentication: A process used to achieve sufficient confidence in the binding between the entity and the presented identity.

4) Article 1. (b) “Authentication”, in the context of trust services, means a process used to attribute an identifier to an object.

해당 조항의 의도는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는 인증의 수준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신원의 증명이 필요한 “Authentication”보다 “Electronic Identification”이 적합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우리측은 신기술 개발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신원 관리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사물 인증 등을 포함할 수 있는 “Authentication”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작업반은 이에 관한 결정을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② 초안 제1조 (k)5)는 “신뢰서비스(Trust service)”에 대한 정의 조항으로, 지난 제59차 회의 전까지는 “데이터의 품질에 일정 수준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전자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었다가 제59차 회의를 통해 유럽연합 전자인증규정(“eIDAS”)⁶⁾의 정의 조항의 접근 방식과 마찬가지로 신뢰서비

스의 예시들(전자서명, 전자타임스탬프 등)을 추가하도록 수정되었다.

이번 제61차 회의에서는 eIDAS 접근방식과 더욱 유사하도록 예시들을 설명하는 문구를 삽입하되, 신뢰서비스가 제공된 서비스 자체를 지칭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초안 제13조7)와 같이 신뢰서비스의 활용으로 인한 결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 “and includes” 다음에 “the methods and means for creating and managing”를 추가할 것이 제안되었다.

이에 관해 의미를 명확히 하는 설명 문구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폭넓은 지지가 있었지만, 표현 형식에 관하여는 △ “methods and means” 대신 “modalities”가 적합하다는 견해, △ “methods”는 찬성하면 서도 “means” 용어 사용에는 반대하는 견해, △ “method” 대신 “creating”이 적합하다

5) Article 1. Definitions (k)

“Trust service” means an electronic service that provides assurance of certain qualities of a data message and includes electronic signatures, electronic seals, electronic time stamps, website authentication, electronic archiving and electronic registered delivery services.

6) eIDAS Article 3 Definitions (16)

‘trust service’ means an electronic service normally provided for remuneration which consists of:

- (a) the creation,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electronic signatures, electronic seals or electronic time stamps, electronic registered delivery services and certificates related to those services, or
- (b) the creation,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certificates for website authentication; or
- (c) the preservation of electronic signatures, seals or certificates related to those services.

7) Article 13. Legal recognition of trust services

The result deriving from the use of a trust service shall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or enforceability, or admissibility as evidence on the sole ground that:

- (a) It is in electronic form; or
- (b) It is not supported by a trust service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 23.

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해당 조항 내 열거된 목록을 전부 삭제하고 추상적 정의만을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고, 목록을 그대로 두는 경우에도 신뢰서비스 목록의 확장 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among other things”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새로운 신뢰서비스가 등장해도 초안의 적용을 받으려면 이에 대응되는 ‘기능적 등가성’ 규칙의 만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확장 가능한 목록으로 정의하는 것은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다.

우리측은 신기술 개발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신뢰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초안 제13조의 기능적 동등성 원칙을 고려하면서, 정의 규정을 유연하고 개방적인 형식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예시 목록을 삭제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예시적 목록을 유지

하는 경우에도 “etc.”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 확장 가능성을 열어둘 것을 제안하였다. 작업반은 결정을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2. 초안 제4조(해석)⁸⁾ 관련

초안 제4조는 초안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항은 사법관할권 제정시(enacting jurisdiction) 통일된 해석을 도모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해석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유엔국제전자계약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ECC) 제5조⁹⁾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초안에 관하여 논의를 시작한 2019년 당시에는 초안의 형태가 협약(convention)인지 모델법(model law)인지 여부에 관하여

8) Article 4. Interpretation

1.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instrument], regard is to be had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2.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instrument]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or,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9) ECC article 5. interpretation

1.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regard is to be had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2.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Of,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합의가 없었으나, 제60차 회의에 이르러 초안을 모델법으로 성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제61차 회의에서는 협약의 특성¹⁰⁾을 반영하기 위해 규정된 ECC 제5조 제2항을 그대로 차용한 제4조 제2항을 모델법 내에서도 유지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일부 국가들은 각국의 법령해석과 국제사법의 원칙에 근거하여 초안 제4조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존 UNCITRAL 모델법에서는 같은 조 제2항 후단과 같은 문구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2항 후단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받아 제2항 후단의 “[or,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3. 초안 제12조(신원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24조(신뢰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관련

신원관리 서비스 제공자 및 신뢰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관련 조항의 경우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58차 회의에서 책임 조항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1항), 책임 면제사유(제2항, 제3항), 책임 면제의 예외사유(4항)로 구성된 하나의 조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59차 회의에 이르러 위 제3, 4항이 삭제되었고, eIDAS 제11조와 제13조의 내용을 차용한 옵션 a,¹¹⁾ 전자서명모델법(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MLES) 제9조의 내용을 차용한 옵션 b,¹²⁾ 초안의 책임 조항 중 남아 있는 제1항 및 제2항에 옵션 a를 추가하는 옵션 c¹³⁾로 나누어졌다. 제

10) ECC 제5조 제2항은 협약의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법 조항(private law provisions)의 해석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협약의 해석에 관한 국제공법의 일반 규칙을 참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추가된 것이다 (A/CN.9/527, para. 124).

11) [The liability of IdM service providers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applicable law.]

12) An IdM service provider shall bear the legal consequences for its failure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is instrument].

13) 1. The IdM service provider shall be liable for damages caused to any person due to intentional or negligent failure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is instrument] [arising from the provision of IdM services][under article 6]

2. Paragraph 1 shall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rules on liability under applicable law.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IdM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to the subscriber f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an IdM system to the extent that:

(a) That use exceeds the limitations [on the purpose or value of the transactions for which the IdM system may be used]; and

60차 회의에서는 일부 표현이나 위치의 변화가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옵션 a와 옵션 c가 남게 되었고, 이번 제61차 회의에서는 옵션 a를 일부 수정한 ‘Option A’¹⁴⁾와 옵션 c를 일부 수정한 ‘Option B’¹⁵⁾ 중에서 무엇이 적합한지 논의가 이어졌다.

제61차 회의에서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은 Option B를 지지하였고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Option A를 지지하였는데, 미국은 많은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가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대안적인 Option C¹⁶⁾를 제시하였다.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각국의 선호가 Option B와

Option C로 양분되었고, 두 가지 입장의 공통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부 용어가 수정되거나 삽입되었다.

Option B의 경우 손해배상 요건 중 책임 능력에 관한 요건은 각국 법률에 따라 상이하다는 의견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 (intentional or negligent)”이 삭제되었고, 기존 UNCITRAL 문헌과 일맥상통하도록 “손해(damage)”를 보다 넓은 의미의 “손실(loss)”로 수정하였다. 또한 Option B에서 계약법상 책임과 초안상 의무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Option B 제1항에 “under contract”가 삽입되었다.¹⁷⁾ 한편, Option C

(b) the IdM service provider has notified provided the subscriber of those limitation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reasonably accessible means that enable [a [user or] third party] to ascertain those limitations.

14) The liability of [IdM service provider][trust service provider]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law.

15) 1. Without prejudice to its liability arising from a failure to comply with other obligations under the law, The[IdM service provider][trust service provider] shall be liable for damage caused to any person due to intentional or negligent failure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is instrument].

2. Paragraph 1 shall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rules on liability under the law.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IdM service provider][trust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to the subscriber f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an [IdM system][trust services] to the extent that:

(a) That use exceeds the limitations on the purpose or value of the transactions for which the [IdM system][trust services] may be used; and

(b) The [IdM service provider][trust service provider] has notified the subscriber of those limit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aw.

16) 1. Subject to rules of mandatory law and the express oblig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s [6, 7 and 14], the liability of the participants in an [IdM systems][Trust service] is governed by the operational rules, procedures, and practices governing the [IdM systems][Trust service];

2. Liability not governed by paragraph 1 shall be governed by otherwise applicable law.

17) 최종적으로 수정된 Option B는 다음과 같다.

1. Without prejudice to its liability arising from a failure to comply with other obligations under the law [or under contract], The [IdM service provider][trust service provider] shall be liable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due to failure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is instrument].

2.~3. (생략)

의 경우 주로 미국이 Option C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했고, 문구의 수정이 있지는 않았다. 이후에 미국은 Option B의 제2항 및 제3항을 반영한 수정안¹⁸⁾을 제시했지만 회의 일정상 이에 대한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Option B와 Option C 간의 차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옵션 간에 공통 요소가 파악되었다. 첫째, 두 옵션 모두 초안상 의무에 더하여 각국 법률(mandatory law)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둘째, 두 옵션 모두 서비스 제공자가 초안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의무가 계약상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게 된다. 셋째, 두 옵션 모두 계약상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넷째, 두 옵션 모두 책임에 관련되어 있으나, 초안에서 논의되지 않은 다른 모든 문제는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applicable law)에 따라 해결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한편, Option B의 제3항은 신원관리 서비스 제공자 또는 신뢰서비스 제공자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일정한 내용(Option B 제3항 (a)목)을 각국의 법령에 따라 미리 통지(같은 항 (b)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단순히 관련 내용을 통보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고 수용(accepted)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초안에 대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공감하였다. 사무국은 이러한 통지 및 수용 메커니즘이 실제로 작동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고, 다음 회기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였다.

4. 초안 제16조(전자서명)¹⁹⁾ 관련

초안 제16조는 신뢰서비스 중 “전자서명 서비스”를 규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항

- 18) 1. The IdM service provider shall be liable for any [loss arising out of] breach of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s [6 and 7]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including operational rules, procedures and practices, subject to any mandatory rules of law.
2. Paragraph 1 shall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rules on liability [under the law].
2bis. Liability not governed by paragraph 1 shall be governed by otherwise applicable law.
3. The IdM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to the subscriber f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trust services to the extent that:
 - (a) That use exceeds the limitations on the purpose or value of the transactions for which the IdM service may be used; and
 - (b) The IdM service provider had notified the subscriber of those limit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aw.

19) Article 16. Electronic signatures

은 전자서명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일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같은 항은 전자서명에 이용된 기술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데이터 메시지와 관련하여 1) 사람을 식별하고 2) 그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가 그 사람의 의사(intention)를 지시(indicate)하고 있으며, 믿을만한 방법이 사용된 경우라면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초안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상황으로 법률(law)이 전자서명을 요구(require)하거나 허용(permit)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위 제1항과 관련하여 지난 제58차 초안에는 법률이 사람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만 상정하고 있었는데, 전자서명의 주체로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이 포함되면서 법률이 서명을 허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59차 회의를 거치면서 사물의 전자서명이 삭제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번 제61차 회의에서는 두 가지 상황 중 법률이 전자서명을 허용(permit)하는 경우를 삭제할지에 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제61차 회의에서는 초안 제16조와 유사한 ECC 제9조 제3항20)의 ‘서명의 흠결 상황(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이 법률이 전자서명을 허용(permit)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require”가 “permit”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permit”만 삭제하면 된다는 의견, “permit”을 “or attributes legal

-
1. Where a rule of law requires or permits a signature of a person, that rule is satisfied in relation to a data message if a reliable method is used to:
 - (a) Identify the person; and
 - (b) Indicate the person's intention in respect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data message.
 2. A method is presumed to be reliable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if an electronic signature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 23 is used.
 3. Paragraph 2 does not limit the ability of any person:
 - (a) To establish in any other way,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the reliability of a method pursuant to article 22; or
 - (b) To adduce evidence of the non-reliability of a designated electronic signature.
- 20) ECC Article 9(3)
-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communication or a contract should be signed by a party,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signature, that requirement is met in relation to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f :
- (a) A method is used to identify the party and to indicate that party's intention in respect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 (b) the method used is either :
 - (i) as reliable a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was generated or communicated, in the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any relevant agreement;
 - (ii) proven in fact to have fulfilled the func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above, by itself or together with further evidence.

effects”로 수정하는 의견, “permit”을 유지 하면서 새로운 용어를 추가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법률이 서명을 허용(permits)한다는 표현은 ‘전자적 이전 가능한 기록 모델 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에 관한 내용으로 적합할 수 있지만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기능적 등가성’을 규정하는 초안의 규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전자서명은 법률의 요구나 서명의 부재 시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술의 발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서명 방법의 하나이므로, 보다 유연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permit”을 수정해야 된다는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합의가 되었고, 어떻게 바꿀지에 관하여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작업반은 ECC 제9조 제3항이 당시 신중한 접근(careful deliberation)의 결과였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다음 회기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5. 초안 제22조(신뢰서비스의 신뢰성 판단 기준)²¹⁾ 관련

초안 제22조는 신뢰서비스의 신뢰성(reliability)을 사후(ex post)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으로, 같은 조 제1항은 신뢰성 판단 요소로 신뢰서비스 제공자의 관행, 적용 가능한 산업 표준, 관련 조항에 적용 가능한 국제적 기준과 절차 등 다양한 예시를 나열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예시적 판단 기준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신뢰서비스에 관련된 기능을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도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제60차 회의 결과, 위 제1항의 예시적 판단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제 61차 초안 제22조 제1항에 (h)호(The function for which the trust service is being used)가 추가되었다. 그런데 초안의 형식상 새로 추가된 위 (h)호는 신뢰성을 결정하

21) Article 22. Requirements for determining reliability for trust services

1. In determining the reliability of the method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16 to 21, all relevant circumstance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which may include:
 - (a)~(g) (생략);
 - (h) The function for which the trust service is being used;
 - (i) (생략);
2. A method is deemed reliable if it is proven in fact to have fulfilled the functions to which the relevant trust service relates.
3. (생략).

는 여러 개의 예시적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여 유사 조항인 ECC 제9조 제3항 (b)(i)²²⁾와 비교하여 적절하지 않다는 의문²³⁾이 제기되었다.

이번 제61차 회의에서는 ECC 제9조 제3항 (b)(i)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안 제22조 제1항 (h)의 문안을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16 to 21, the method is reliable if: (i) it is as reliable as appropriate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e trust service is being used”로 대체할 것이 제안되었다. 이에 반하여 신뢰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이용 목적(purpose)을 알 수 없으므로, 위 제22조 제1항 (h)의 ‘function’이 대안인 ‘purpose’보다 적합한 개념이며, ‘as appropriate’라는 개념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신뢰성 판단은 신뢰서비스의 이용 목적을 알고 있는 이용자 및 관련 인물(relying party) 사이의 문제이므로 신뢰서비스 제공자는 관련이 없다는 반론이 다시 제기되었다.

한편, 이른바 ‘부인방지 안전조항(safety

clause against non-repudiation)’이라 불리는 초안 제22조 제2항은 ECC 제9조 제3항 (b)(ii)²⁴⁾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조항에 의하면 서명의 신뢰성과 무관하게 사용된 서명이 1) 실제 서명자의 신원을 표시하고 2) 서명자가 그 전자통신에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가지는 의사가 나타나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 서명의 효력이 인정²⁵⁾된다.

그런데 각주 25) ECC 해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ECC 제9조 제3항 (b)(ii)는 같은 항 (b)(i)와 무관하게 신뢰성 테스트의 대안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즉, (ii)항으로 증명된 방법은 신뢰성 판단과 무관함), 초안 제2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연계하여 신뢰성 테스트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즉, 같은 조 제2항으로 증명된 방법은 신뢰성 테스트를 만족한 것으로 추정(deem reliable)됨). 따라서, 이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ECC 제9조 제3항의 법적 효과와 초안 제22조의 법적 효과가 동일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다.²⁶⁾

이에 대하여, 제61차 회의에서는 초안

22) 위 각주 20) 참조.

23) Issues paper for informal consultations, note by the Secretariat, para. 52.

24) 위 각주 20) 참조.

25) ECC 해설 para. 164 paragraph 3 (b)(ii) validates a signature method—regardless of its reliability in principle—whenever the method used is proven infact to have identified the signatory and indicated the signatory’s intention in respect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26) Issues paper for informal consultations, note by the Secretariat, para. 58.

제22조 제2항의 “deemed”는 입증책임 전환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문언 자체에 ECC와 같이 ‘추가적인 증거 단독 또는 공동으로(by itself or together with further evidence)’라는 문구를 포함하지 않는 차이가 있으므로, 초안 제2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위에서 논의된 초안 제22조 제1항 (h)의 대안으로 제시된 문구(“(i) it is as reliable as appropriate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e trust service is being used”)에 “(ii) it is proven in fact to have fulfilled the functions to which the relevant trust service relates, by itself or together with further evidence”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초안은 사전, 사후적 신뢰성을 모두 규정하는 점에서 사후적 신뢰성만으로 접근하는 ECC와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ECC와 동일하게 수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부인방지 안전조항”의 취지를 살리면서 초안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초안 제22조 제1항 (h)

를 그대로 두고, “in particular, if it is proven in fact that the function has been fulfilled”를 추가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결국, 이번 제61차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작업반은 다음 회기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6. 초안 제23조(신뢰할 수 있는 신뢰서비스의 지정)²⁷⁾ 관련

초안 제23조는 이른바 ‘신뢰성의 추정(presumption of reliability)’ 조항으로, 신뢰서비스의 신뢰성을 사전적(*ex ante*)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사무국은 초안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는 판단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초안 제23조 제1항에 (a)호와 (b)호²⁸⁾를 삽입하고, 초안 제16조 내지 제21조에서 내용이 중복되는 각조 제2항 및 제3항²⁹⁾의 삭제를 제안하였다.

27) Article 23. Designation of reliable trust services

1. A person, organ or authority, whether public or private, specified by the enacting jurisdiction as competent may designate trust services that are reliable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16 to 21.
 - [(a). A method is presumed to be reliable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16 to 21, if a trust service designated pursuant to paragraph 1 is used.
 - (b). Paragraph 2 does not limit the ability of any person:
 - a) To establish in any other way the reliability of a method; or
 - b) To adduce evidence of the non-reliability of a designated trust service.]

28) 위 각주 27) 대괄호 참조.

29) 2. A method is presumed to be reliable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if an [16조 내지 21조의 개별 신뢰 서비스]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 23 is used.

이에 대하여 통합 논의는 규정의 완전성 및 명확성이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다수의 국가는 초안 규정 내의 중복을 피하는 것에 지지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중복되는 조항을 초안 제23조가 아니라 초안 제22조로 통합하자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고, 사무국은 이러한 제안을 고려하여 다음 회기에 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7. 초안 제25조(국경 간 상호 인증 관련³⁰⁾)

초안 제25조는 외국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승인을 위한 조항으로, 이번 제61차 회의에서는 △관할 국가 밖에서 제공되는 신원관리 서비스 또는 신뢰서비스가 관

할 국가 내에서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 필요한 신뢰의 수준(level of reliability)을 어느 정도로 할지, 그리고 △국경간 제공되는 신원관리의 대상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초안 제25조 제3항은 국제적 맥락에서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 신뢰성의 사전(*ex ante*) 지정 조항(초안 제11조 및 제23조)으로 이번 회의에 새롭게 제안된 것인데,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신뢰의 수준과 관련하여 제58차 회의 초안에는 전자서명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 MLES) 제12조 제2항³¹⁾을 기초로 “상당히 동등(substantially equivalent)”과 “동등(the same)”이 함께 규정되어 있었는데, 제60차 회의까지 두 가지 옵션이 그대로 유지되었

3. Paragraph 2 does not limit the ability of any person:

- (a) To establish in any other way,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the reliability of a method pursuant to article 22; or
- (b) To adduce evidence of the non-reliability of a designated [16조 내지 21조의 개별 신뢰서비스].

30) Article 25. Cross-border recognition of IdM[systems][services] and trust services

- 1. (생략)
- 2. In determining whether [identity credentials][an IdM system][IdM services] or a trust service offers [a substantially equivalent][the same] level of reliability, regard shall be had to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s].
- [3. Equivalence shall be presumed if a person, organ or authority designated by [the enacting jurisdiction] according to article 11 and 23 has determined the equivalence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31) MLES, Article 12. Recognition of foreign certificates and electronic signatures

- 1. (생략)
- 2. A certificate issued outside [the enacting State] shall have the same legal effect in [the enacting State] as a certificate issued in [the enacting State] if it offers a substantially equivalent level of reliability.
- 3. ~ 5. (생략)

다. 이번 제61차 회의에서는 추가적으로 신원관리 시스템에 대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의 수준을 “최소한 동등(at least equivalent)”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많은 지지를 받았다. 우리 측은 “상당히 동등”이란 개념은 주관적이어서 “상당히”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무국은 지지를 거의 얻지 못한 “동등”을 삭제하고, “상당히 동등” 및 “최소한 동등”을 남긴 상태로 최종 결정을 다음 회기로 유보하였다.

다음으로, 신원관리(IdM)의 맥락에서 신뢰의 수준을 제공하는 주체를 신원자격증명(identity credentials), 신원관리시스템(IdM system) 또는 신원관리서비스(IdM service) 중 어느 것으로 할지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실제 국경 간 적용에 있어서 신뢰되거나 승인되는 신원관리 대상은 신원자격증명(identity credentials)이라는 견해, △신원자격증명은 신원관리시스템 및 신원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개념으로 부적합하고 신원관리서비스(an IdM service or IdM services)가 적합하다는 견해, △신원관리시스템이 신원관리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시스템의 속성을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원관리시스템(IdM system)이 적합하다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초안 제25조 제3항이 삽입되면 국제적 맥락에서 신뢰성의 사전 지정 접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으므로 초안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고, 우리 측은 초안규정의 형식이 “협약”인 경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모델법”인 이상, 각국의 사전 지정의 기준이 상이하므로 실효성을 가질 수 없고, 초안 제25조 제3항은 초안 제11조 제4항³²⁾ 및 제23조 제4항³³⁾과 중복되므로, 동 조항이 없더라도 제1항과 제2항만으로 위 제25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무국은 초안 제25조 제3항 삭제 여부에 관한 논의를 유보하고 제3항 자체를 괄호를

32) Article 11. Designation of reliable IdM systems

4. In designating an IdM system [service], no regard shall be had:
 (a) To the geographic location where the IdM system [service] is operated; or
 (b) To the geographic loc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IdM service provider.

33) Article 23. Designation of reliable trust services

4. In designating a trust service, no regard shall be had:
 (a) To the geographic location where the trust service is provided; or
 (b) To the geographic loc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trust service provider.

설정된 채로 다음 회기에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Ⅲ. 평가 및 소감

금번 제61차 작업반 회의에 직접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현재 의제로 설정된 주제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왜 지금 시점에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회의 결과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작업반의 현재 논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독자도 이와 같은 점을 염두해두면 좋을 것 같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대부분의 쟁점은 아쉽게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다음 회기에서 다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논의가 이처럼 평행선을 달렸던 이유를 간략하게 짐작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법적 구조를 강조하는 미국과 국가 주도의 법체계를 강조하는 유럽연합(구체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 이견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제58차 회의에서 처음 공개된 초안의 상당 부분을 유럽연합 전자인증규정(“eIDAS”)에서 차용한 것을 고려하면, 미국이 강조하는 계약법적

법체계(legal framework)가 쉽게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에서 납득이 되는 부분이다.

둘째, 기술친화적인 전자상거래 특성상 기술의 발달 수준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처음 초안을 만들 때 그 근간이 되는 기본원칙 중 하나로 “초안이 신원관리 또는 신뢰서비스에 이용되는 특정 기술의 제공을 배제, 제한 또는 법적 효력을 박탈할 목적으로 적용되서는 안된다”는 ‘기술적 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³⁴⁾을 천명했지만, 앞서 살펴본 ‘정의 조항’에 대한 논의만 보더라도 기술의 개발 정도에 따라 초안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초안과 기존 UNCITRAL 전자상거래 규범과의 정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 현황이 개입된다는 점이다. 즉, 기존 UNCITRAL 전자상거래 규범은 협약인 ECC를 제외하고 각국의 사정에 따라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다르게 도입³⁵⁾되었는데, 각국은 현재 자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 현황에 따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단순히 초안과

34) A/CN.9/936, para. 67.

35)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유엔전자상거래모델법’의 경우 1996년에 성안된 이후 국내에 도입되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전자서명’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문서의 무결성 및 진정성의 보장이 필요해짐에 따라 1999년에 국내에서 ‘전자서명법’이 먼저 제정되고 난 이후에 2001년에 비로소 ‘유엔전자서명모델법’이 성안되었다.

UNCITRAL 전자상거래 규범과의 정합성을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작업반의 계획상 다음 회기를 끝으로 「국경간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규범안」은 모델법으로 성안될 예정이다. 모델법을 국내로 수용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지만, 국내에 입법되는 경우 많은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초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자서명법’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법 수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다음 회기를 거쳐 초안이 확정된 다음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초안과 최근 개정된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의 차이점을 가볍게 언급하면서 본 고를 마치고자 한다.

개정 전자서명법은 기존 국가 주도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주도의 다양

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개정 전자서명법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민간의 전자서명인증업무는 국가가 운영기준³⁶⁾을 고시하고, 준수사실 인정 여부³⁷⁾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서명 서비스의 제공자(provider) 측면에서는 민간 영역이 활성화된 것이지만 전자서명의 관리 및 감독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여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현재 ‘전자서명법’은 많은 신뢰서비스(미래에 개발될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여) 중 하나의 기술인 ‘전자서명’만을 다룬 것이다. 초안에 규정된 다른 신뢰서비스들(예를 들어 전자 타임 스탬프 등)은 우리 국내법상 전자거래기본법 등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한편, 현재 ‘전자서명법’은 신뢰서비스이자 동시에 신원관리 서비스로

36) 전자서명법 제7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1. (생략)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위조·변조 방지대책
 2.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가입·이용 절차 및 가입자 확인방법
 3.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폐지 절차
 4.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시설기준 및 자료의 보호방법
 5.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6.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7) 전자서명법 제9조(인정기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능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서명이 그 기술의 특성상 사람의 신원을 확인(또는 식별)하기가 유용하기 때문에 함께 사용된 것이다. 즉, 신원관리와 신뢰서비스는 이용 기술에 따라 상호 연동되기도 하고 반대로 서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³⁸⁾

38)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제도’를 통해 신원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한편 개정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인증업자로 지정되는 경우 자동으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다).